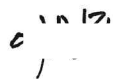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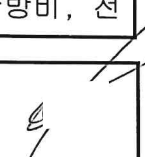
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3차)

1.일 시	2021년 4월 16일(목) PM 4시	2.장 소	9동 2층 중회의실
3.참석자	송 , 이 , 김 , 염 , 이 , 이 , 박 , 김	4.불참자	서
5.안 건	1)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 심의 2)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(안) 심의 3)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(안) 심의		
6.회의 내용			
<p>위원장 :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, 사립학교법 제29조·제31조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0조·제41조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,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</p> <p>(제 1의 안)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</p> <p>위원장 :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</p> <p>주무부서 : 2020회계연도 세입을 설명함. 등록금 수입, 전입 및 기부수입, 교육부대수입, 교육외수입, 투자와 기타자산수입, 고정자산매각,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등 총 세입은 55,771,020천원이며,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및 단기수강료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은 약 3억원 감소하였으며, 입시 지원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관 입사생 감소로 인해 교육부대수입은 약 9억원 감소하였고, 행복기숙사 건축을 위한 기금 인출로 인하여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은 약 21억원 증가하였음을 설명함</p> <p>주무부서 : 2020회계연도 세출을 설명함. 교직원 보수, 관리운영비, 연구학생경비, 교육외비용, 투자와 기타자산지출, 고정자산매입지출,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등 총 세출은 55,771,020천원이며, 겸임교원 및 강사 감소와 교직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교직원 보수는 감소하였으며,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따라 난방비, 전</p>			
간서명 - 위원 : 이  위원 : 염  위원 : 박 			

기수도료 감소로 인해 관리운영비는 감소하였고,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특별장학금 신설에 따른 연구학생경비는 증가하였음을 설명함

위원장 : 위원장은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(안)에 대하여 다른 위원에게 이의가 없는지 질의함

위 원 :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고 위원 모두 동의함

(제 2의 안)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(안)

위원장 :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(안)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

주무부서 : 2021회계연도 세입을 설명함.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부족으로 신입생 등록율이 감소됨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2,301,627천원 감소하였으며, 캠퍼스마스터플랜에 의한 교육환경개선공사 및 교직원 인건비 법정부담금,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의기금인출로 인해 투자와 기타자산수입은 3,536,400천원 증가하였으며, 2020회계연도 결산 반영으로 전기이월자금 1,035,091천원 증가하여 수입 추경예산은 총 64,142,661천원임을 설명함

주무부서 : 2021회계연도 세출을 설명함. 등록금 수입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연구비, 교내장학금, 실험실습비, 학생지원비가 감소됨에 따라 연구학생경비는 588,100천원 감소하였으며,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선급 법인세 환급에 따른 적립으로 197,298천원 증가하였고, 교육환경개선공사에 따른 건설가계정,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매입이 증가됨에 따라 고정자산매입지출은 2,867,711천원 증가하였음. 차기이월자금을 포함한 세출 추경예산은 총 64,142,661천원임을 설명함

위원장 : 학령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및 급격한 감소에 따라 지방 대학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, 구성원 모두가 어려움을 분담하고 대학 운영의 내실화를 기울이며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유지하면 대학의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함

위 원 : 염 위원은 대학이 처한 어려운 재정 현실 속에 예산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하며,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함

간서명 - 위원 : 이

이

위원 : 염

위원 : 박

위원장 : 위원장은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(안)에 대하여 다른 위원에게 이의가 없는지 질의함

위 원 :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고 위원 모두 동의함

(제 3의 안)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(안)

위원장 :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주무부서에 요청함

주무부서 : 고등교육법 제11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개정에 의해 상위법을 준수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,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.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미만으로 상한선을 제한하였으며, 관련 전문가 위원의 선임 시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고 설명함

위 원 : 이 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구성단위별 위원의 상한선에 준수하여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

주무부서 :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9인으로, 교직원 3인, 학생 3인, 동문 1인, 관련전문가 2인으로 구성단위별 10분의 5미만에 충족하고 있다고 답변함

위 원 : 박 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

주무부서 : 2021년 5월 1일자 시행 예정이라고 답변함

위원장 :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(안)에 대하여 다른 위원에게 이의가 없는지 질의함

위 원 : 다른 의견이 없음을 표하고 위원 모두 동의함

위원장 : 이로써 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, 2021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,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건이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포하고, 회의록 서명의 간소화를 위해 학교 측 이 위원, 학생 측 박 위원, 외부인사 영 위원 3인을 간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함

위 원 : 위원 모두 동의함

간서명 - 위원 : 이

위원 : 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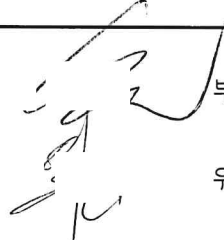
위원 : 박

위원장 :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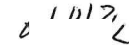
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·날인함

2021년 4월 16일

위원장 : 송



부위원장: 이



위원 : 김



위원 : 영

위원 : 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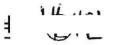


위원 : 이

위원 : 서

인

위원 : 박



위원 : 김

